

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Q 농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지

A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지만 구체적으로는 동법 제14조의 근로자와 동법 제15조의 사용자에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따라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지만, 농민이 자기의 땅을 자기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거나 근로자를 사용한

고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에게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자영업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임.

Q 국가기관에 근무한 청원경찰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A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사용종속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면 당해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바, 청원경찰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청원경찰법 제5조 제3항에서 청원경찰의 임금지급·임용방법·교육·보수 및 징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청원경

찰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청원경찰 경비기준액'에서는 봉급 및 감독자 직책수당 이외에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을 순경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같은 법 제5조 제4항 외에 청원경찰의 복수에 관하여는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외 근로시간과 휴게 및 휴일, 연차유급휴가 부여기준 등에 관하여 청원경찰법령에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임.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감시·단속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게 등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다만,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의 지급기준은 청원경찰법 및 관련규정에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됨.

☞한솔노무사사무소(031-877-7522-3)

법·률·상·담

변호사 **김제동**



【부동산취득시효완성 후 매수청구한 행위의 시효이익포기 해당여부】

Q 저는 32년 전 甲으로부터 대지 50평과 그 지상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토지측량결과 제가 점유하는 대지가 이웃집 乙소유 대지 8평 정도를 침범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일, 지적도대로 대지를 나누려면 제가 거주하는 주택의 일부가 철거되어야만 하므로 돈을 주고 매수하려 했다고 하니, 乙은 시가 이상의 높은 금액을 요구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취득시효완성 후 매수했다

한 것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 되는지요?

A 민법 제245조에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甲으로부터 매수한 이후 점유, 사용해 온 대지 58평 중 등기되어 있는 50평을 제외한 나머지 8평에 대하여는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점유했다고 볼 수 있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는 이러한 점유취득시효

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고 오히려 매수를 제의함으로써 과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이 경과한 뒤에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그 부동산을 매수하자고 제의한 일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점유자가 위 부동산이 그 소유자의 소유임을 승인하여 타주점유(他主占有)로 전환되었다거나 시효의 이익을 포기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민법 제184조, 제245조, 대법원 1992.9.1. 92다26543)

따라서 귀하는 20년 이상 점유해 온 乙소유 대지 8평에 대하여 乙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해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의 : 변호사 김제동 법률사무소 (031-829-9311)

전·기·상·식

한국전력공사 포천지점 수요관리과장 **나현철**



1. 1번에 심야전력 요금을 대폭 인상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심야전력은 고유가의 영향으로 수요가 점점 증가하여 고비용의 LNG나 증유발전기를 가동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전력원가 또한 상승하여 현재 요금은 원가에 못 미치고 있으며 수요증가로 겨울철 전력설비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전에서는 심야전력의 수요를

조절하고 원가를 보전하기 위하여 부득이 심야전력 요금을 '08.1.1부터 아래와 같이 평균 17.5% 인상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심야전력(을)의 경우는 축냉설비 보급을 감안하여 기타 시간대 및 기본요금을 3% 정도 인하하여 전체적으로 3.2%정도 인상 하였으며 기초생활 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20% 감면혜택 제도를 신설하여 인상이전보다 오히려 5.6% 인하됨을

알려 드립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의 경우도 인상합니까?

심야전력 요금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부담경감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주택용 요금과 같이 20% 할인제도를 시행합니다. 따라서 심야전력요금도 인상하더라도 할인제도 도입시 전기요금도 현재보다 오히려 5.6% 정도 경감합니다.

3. 심야전력 요금을 앞으로 계속 인상할 계획입니까?

심야전력 요금이 원가이하로서 판매수지가 날로 악화되고 있으므로 요금의 현실화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고객님의 충격을 최소화 되도록 요금인상의 사전 안내, 단계적 인상의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의 : 포천지점 수요관리과(031-539-0231)

여·성·상·식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이문환**



Q 【청소년 성보호법】중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란?

A 성범죄자로부터 청소년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로 이웃에 사는 성범죄자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하더라도 얼굴까지 확인한 그 사람이 주위에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불안감만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자가 일정한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새 법률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청소년이 있는 시

설이나 교육기관에 10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 확정 후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며,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운영자는 취업자 또는 취업하려는 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해당시설 소재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형사과)에 범죄경력 조회 요청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취업제한 대상자의 취업여부를 직접 점검하거나 관계 기관 조회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

업제한 대상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종사자가 취업제한 대상자일 경우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응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운영자가 취업제한 대상일 경우 폐쇄를 요구할 수 있고, 불응할 경우 관계행정기관에 등록, 허가 등의 취소 청구를 할 수 있다.

■ 취업제한 대상시설(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

- ▲학교, 학원 및 교습소, 유치원,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 ▲청소년 쉼터·보호센터·재활센터·활동시설
- ▲성매매청소년 지원시설·피해상담소
-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업무종사자)
- ▲청소년이용 체육시설

☞문의: 포천가족·성상담센터(031-542-3171)

의·학·상·식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이비인후과장 **강진욱**



이비인후과에서는 어떤 성형수술을 받아야 하는가?(1)

최근 사회적으로 성형, 체형 등의 미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요구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제 성형은 일부 특수한 계층에서만 하는 수술이 아닌 보편화된 기술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단순히 성형외과에 국한된 기술이었다면 최근에는 각 과별로 보다 전문적이고 기능을 고려한 수술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과거 성형외과에서 주로 이루어졌던 눈성형, 코성형, 필러, 보톡스, 지방이식, 체형관리 등의

수술들이 그 전문 영역에 따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산부인과, 내과, 심지어 치과에서 그 중요한 영역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성형외과 과거 생각하던 것 만큼 특정한 사람만이 받는 수술이 아님을 반증하며 성형외과에서만 받는 수술이 아님을 이야기 합니다.

이비인후과 진료 영역의 30%이상은 이(귀), 비(코), 인후(인두와 후두)영역 이외에도 두경부와 불리우는 목부터 얼굴, 두피에 이르는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피부의 모양을 변형시키거나 혹은 보형물을 넣어 모양을 아름답게 만드는 수준의 성형을 넘어 그 기능적인 성형을

함께 고려하는 안전한 성형수술이 요구됩니다. 외적인 모양의 개선과 아울러 내적인 병변의 교정이 이루어질 때 보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성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다른과 영역에서도 두드러지는데 과거 성형외과에서 이루어진 레이저 시술은 피부부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시술하는 피부과의 영역으로 넘어갔으며 단순한 쌍꺼풀은 물론 안검하수(눈꺼풀이 떨어져 흘러보이는 것)를 동반한 쌍꺼풀 수술들이 이제는 안과영역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얼굴 윤곽 성형, 특히 하악골(턱뼈)의 교정에서는 하악골을 단순히 잘라내어 모양을 가름하게 하는 것보다 수술후 치아교합이 무엇보다 중요하여 구강외과 불리우는 치과의 역할이 주가 되고 있으며, 비만의 치료에 있어서도 단순한 지방흡입보다는 약물, 운동, 식이, 심리치료가 결합된 내과적인 포괄적인 치료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문의 :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031-539-9169)

세·무·상·담

세무사 **박운중**



Q 2008년 부가가치세법 개정내용 중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A 가공·위장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고, 가산세 중복 시의 적용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중점에는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도 교부자와 똑같이 공급가액의 2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기로 개정하였으며,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 가산세(공급가액의 2퍼센트)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1퍼센트)가 중복되는 경우 상대적으로 무거운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 가산세를 우선 적용하기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

용카드 등 발생금액에 대한 세금공제 비율을 종전의 1,000분의 15에서 100분의 2로 상향 조정하여 영세 음식점업 등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의 정확한 교부와 수취행위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과정으로 모든 세금을 부과하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전국 세무서에 설치된 '자료상 색출 전담팀'을 활용해 가짜 세금계산서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료상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행법으로 긴급체포해 고발할 방침을 세우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한 어떠한 거래에 있어서도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교부하고 수취하여야 하겠습니까.

☞문의 : 세무사 박운중(031-872-6116)

포천신문 운영위원회 모집공고

포천신문 운영위원회(위원장 박승찬)는 언제나 바른 뉴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위원 상호간의 친목을 다지는 운영위원회 설립목적에 맞도록 활동할 운영위원을 공개모집 (모집인원 〇명)합니다.



- 위원장 : 박승찬
- 부위원장 : 나근수
- 상임고문 : 최호열
- 고문 : 이상갑
- 고문 : 배성호
- 고문 : 유병호
- 고문 : 윤이용
- 고문 : 이종희
- 감사 : 이희선
- 총무 : 이수복
- 부총무 : 임대섭

포천신문 운영위원회는 포천신문이 전국 최고의 지역정론지로 건전하게 발전하는데 지원함과 동시에 위원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